

힐스테이트 초곡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4-262-530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2차)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2차)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1.06.25.(금)	26.01.30.(금)	26.02.04.(수)	26.02.09.(월)	26.02.19.(목)~26.02.20.(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본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30.(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32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6.2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 2021000469이므로, 본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2차)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 정	26.02.04.(수)	26.02.09.(월)	26.02.19.(목) ~ 26.02.20.(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80, 지앤하임상가 301동 305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의무화로 **포항시 복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정률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 취소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써 최초 계약 당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에 대한 계약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기 설치된 추가선택 품목 외에는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급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867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8개동 총 1,866세대 중 잔여 10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4월 예정(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로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32	01	59.9410B	59B	2	101	1002
					102	2303
	02	74.6380A	74A	4	106	202
					107	2004
					113	405, 706
	03	84.8560A	84A	1	108	901
	04	84.8390B	84B	3	115	1002
					116	103
					117	403
	합 계			1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합계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약시	2026.04.20.
59.9410B	59B	101-1002	33,616,000	226,384,000	-	260,000,000	26,000,000	234,000,000
		102-2303	33,616,000	226,384,000	-	260,000,000	26,000,000	234,000,000
74.6380A	74A	106-202	40,096,000	269,904,000	-	310,000,000	31,000,000	279,000,000
		107-2004	41,390,000	278,610,000	-	320,000,000	32,000,000	288,000,000
		113-405	41,002,000	275,998,000	-	317,000,000	31,700,000	285,300,000
		113-706	41,390,000	278,610,000	-	320,000,000	32,000,000	288,000,000
84.8560A	84A	108-901	47,218,000	315,782,000	-	363,000,000	36,300,000	326,700,000
84.8390B	84B	115-1002	47,192,000	314,808,000	-	362,000,000	36,200,000	325,800,000
		116-103	44,845,000	299,155,000	-	344,000,000	34,400,000	309,600,000
		117-403	46,671,000	311,329,000	-	358,000,000	35,800,000	322,200,000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2026.04.20.	
59B	101-1002	무상옵션	-	-	-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sk매직
	102-2303	무상옵션	-	-	-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인덕션 sk매직
74A	106-202	무상옵션	-	-	-	[파우더장] 좌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인덕션 sk매직
	107-2004	무상옵션	-	-	-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sk매직
	113-405	무상옵션	-	-	-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인덕션 sk매직
	113-706	무상옵션	-	-	-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인덕션 sk매직
84A	108-901	무상옵션	-	-	-	[공용욕실] 욕조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인덕션 sk매직
84B	115-1002	유상옵션	4,530,000	453,000	4,077,000	[주방가전] 냉장+냉동+김치냉장고 LG 디오스
		무상옵션	-	-	-	[공용욕실] 샤워부스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인덕션 sk매직
	116-103	무상옵션	-	-	-	[공용욕실] 욕조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인덕션 sk매직
	117-403	무상옵션	-	-	-	[공용욕실] 욕조 [파우더장] 입식 [평면선택] 침실1,2 분리형 [쿡탑] 3구 하이브리드(인덕션2+하이라이트1) sk매직

- 추가선택품목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취소 및 옵션 추가 불가, 승계 거부 시 계약 불가, 비용납부 후 계약체결)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항목 이외의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등)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하나은행	138-910041-50104	한림건설(주)	납부 시 호수 및 계약자성명 필히 기재
추가선택품목				

■ 대금 납부 유의사항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계좌가 동일하오니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지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예시 : 101동 2001호 계약자 → '10120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대금은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상기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등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2차)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2차)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09.(월) ~ 2026.02.18(수)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0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2026.02.19.(목)~02.20(금)**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1.30.(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의 신청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실물지참 필수)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 전자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및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자격 검증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및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발급기준 : 본인) 유의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등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서류	기타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02.19.(목)~26.02.20.(금)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신분증	계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실물지참 필수)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 수납 불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일체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 계약 시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발급용 / 전자인감증명서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불가
	위임장	계약자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서명) 날인
	신분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모바일 신분증 불가 / 실물지참 필수) -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한 여권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추후 서류 제출 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동·호 배정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추후 통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 납부일 또는 잔금 약정일 중 선행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일 이후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잔금납부일 이전 잔금을 완납하여 입주하는 경우 열쇠 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및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한림건설(주)	현대건설(주)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62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법인등록번호	190111-0012051	110111-0007909

■ 본 무순위(2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 80, 지엔하임상가 301동 305호

■ 분양 문의 : 054-262-5300